

★ ◎

사장 방침 제201호

문서번호	경영관리부-492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6.03.15
공개여부	비공개(7)
일상감사	대상

파트장	경영관리부장	기획조정처장	기획경영본부장	사장
김찬수	차승민	전오식	김우진	03/15 변창흠
협조	예산자금부장 조한보	총무부장 박원수	인사노무부장 이상석	
	서울시장출입장 이세정	경영지원처장 문완식		

일상 감사	No. 187	감사	의견
	2016/03/14	김현식	의견있음

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(안)

서울특별시 SH공사  
( 기획경영본부 경영관리부 )

# 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(안)

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의 변경 및 책정절차의 강화, 사업다각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수 조정 등을 위해 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코자 함.

## I 관련근거

- 2015년도 사장방침제437호(2015.5.27) 『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』
- 2015년도 사장방침제1066호(2015.12.9)  
『에스에이치(SH)공사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』
- 택지사업본부장방침제38호(2016.2.2) 『식물전문가 인력채용 검토 보고』
- 주거복지본부장방침제40호(2016.2.5)  
『주거복지 신규사업 추진인력 보강방안』
- 공공개발사업본부장방침제42호(2016.2.29)  
『가든파이브사업단 유통전문가 사용 계획』
- 기획부-332호(2016.2.5) 『관리 준전문가(속기사) 총원계획』
- 인사노무부-899호(2016.2.29)  
『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등 개정 요청』
- 2015년도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-5870호(2015.7.9)  
『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 알림』
  -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인력구성 : 총10명  
(SH공사 인력 4, 전문가 채용 4, 파견 직원 2)

## II

### 개정이유

- 에스에이치(SH)공사정관 개정에 따른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 변경
- 신규 전문 인력의 수요 충족을 위한 정원외인력간 정수 조정
-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승인심사 강화

## III

### 개정방향

- 사규체계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의 개정
- 신규 인력 수요에 대한 정원외인력간 정수 조정을 통하여 증원 억제
- 정원외인력의 적용범위에 따라 임대주택관리직원 및 사무전문가 재분류
- 오기·탈자 등의 정정 및 부적절한 자구의 수정

## IV

### 주요 개정내용

- 직제규정 개정
  - 정관(제22조제2항)에서 정원외인력정수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조(정원외 인력정수) 삭제
  - 직원을 일반직, 전문직, 전문위원으로 구분(직제규정 제10조제1항)하는 데 따른 자구 수정 ☞ 직제규정 제14조(정원)제1항과 용어 통일

현 행	개 정 (안)
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(전략) <u>임·직원</u> <u>및 전문직</u> (후략)	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(전략) <u>임원</u> <u>및 직원</u> (후략)
제19조(특명사항) (전략) <u>직원</u> 및 <u>전문직</u> 이 (후략)	제19조(특명사항) (전략) <u>직원이</u> (후략)

- 오기, 탈자 등의 정정

현 행	개 정 (안)
제17조(업무분장) 생략 ※ 별표3 업무분장의 '건설안전본부'	제17조(업무분장) 현행과 같음 ※ 별표3 업무분장의 ' <u>건설안전사업본부</u> '
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생략 ② 사장은 (중략) <u>소속직원</u>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(후략)	제18조(권한과 책임)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(중략) <u>직원</u>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(후략)

○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

- 정원외인력정수 관리 근거 변경 ⇨ 제1조(목적) 개정

(현행) 직제규정 제15조 → (변경) 정관 제22조제2항

- 정원외인력 적용대상의 개정 ⇨ 제2조(적용범위)제1호, 제4호, 제5호

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이 유
임대주택 관리직원 및 주거복지상담사	<u>임대주택관리직원</u>	주거복지상담사를 <u>임대주택관리 직원의 '사무원'</u> 에 포함
사무전문가	<u>사무관리원</u>	사무 등 업무지원 → <u>특정사무 (비서, 홍보)로 한정</u>
	<u>사무기술전문가</u>	일시적 사업 확대에 따라 <u>이사회 에서 승인</u> 한 사무·기술분야 전문 인력으로 재정립

※ 2015년 노사합의(2015.12.24)에 따라 주거복지상담사를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포함

- 용어의 정의 확대 ⇨ 제3조(용어의 정의)제2항 내지 제4항 신설

· 정원외인력의 '사용부서', '정수관리부서', '한시정수'의 용어 추가

- 새로운 정원외인력 요청기준 정립 ⇨ 제4조(정수책정의 요구) 개정

· 요청요건을 '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'으로 한정

· 매년 8월말까지로 정해진 요청기한 폐지

-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심사 강화

- 승인권자 변경 ☞ 제5조(정수책정)제1항 신설

(현행) 정수관리부서에서 적정여부 검토 후 승인 → (개정) **이사회 의결**

- 승인권자 변경에 따른 제절차 생략 ☞ 제5조(정수책정)제2항 개정

- ① 정원관리부서의 인사부서, 사용부서, 예산부서에 대한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결과 통보 폐지 ☞ **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삭제**
- ② 예산부서의 정수관리부서, 인사부서, 사용부서에 대한 예산확보 결과 통보 폐지

- 사용부서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의무 부여

☞ 제5조(정수책정)제3항 개정

- 주거복지본부의 정원외인력정수 관리임무 삭제(경영관리부에서 관리)

☞ 제6조(부서별 임무)제3호 개정

- 정수 조정 ☞ 제7조(정수의 총수) 관련 별표1 개정

- 신규 수요 인력

분 야	인원	담 당 업 무	자 격	사용기간
계	4명			
속 기 사	1명	증가 추세에 있는 대내·외 회의 내용의 녹취 및 관리	속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	임용일로부터 해당 업무의 완성까지
주거복지	1명	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발굴·기획, 서울형 주택바우처 조사 시범사업(10,000세대) 등	해당 자격소지 및 경력 7년 이상	임용일로부터 2년
유 통	1명	NC백화점, 현대백화점, 톨동 등 대형 유통업체 유치·관리	대형유통업체 유치 및 관리 등 경력 15년 이상	2016.10 부터 해당 사업의 완료일까지
식물관리	1명	마곡중앙공원 식물원의 3,000여 종의 식물 관리	식물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	임용일로부터 2018.9.30 까지

· 분야별 정수조정(안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임대주택관리	고객지원상담	건물유지관리	사무전문가
현행(A)	414	371	11	10	22
현 원	406	370	11	9	16
개정(안)(B)	414	371	11	9	23
증감(B-A)	-	-	-	△1	1

· 사무전문가의 재분류 및 정수 조정(안)

☞ 제2조제4호 및 제5호 개정에 따른 재분류 및 정수 조정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사무관리원	사무기술전문가
현행(A)	22	4	18
현 원	16	3	13
개정(안)(B)	23	3	20
증감(B-A)	1	△1	2

※ 사무관리원과 사무기술전문가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

· 사무기술전문가의 정수 조정(안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숙기사	재정관리	공공디벨로퍼	홍보	해외사업	주거복지	시유지관리	마케팅	유통	식물	설계	에너지
현행(A)	18		1	3	1	6		2	3			1	1
현 원	13		1	3	1	1		2	3			1	1
조정(안)(B)	20	1	1	3	1	4	1	2	3	1	1	1	1
증감(B-A)	2	1				△2	1			1	1		

※ 해외사업분야의 결원 5명 중 3명은 채용 예정

· 신규 수요 인력(4명)의 확보 방안 ☞ 결원 또는 잉여정수 활용

$$4\text{명} = \frac{\text{결원 2명}}{(\text{건물유지관리원 1명, 사무관리원 1명})} + \frac{\text{잉여정수 2명}}{(\text{해외사업분야 2명})}$$

· 임대주택관리직원의 8급갑 이하 정수 통합

▶ 별표1 '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 정원표' 개정

구분	계							임대주택 관리직원							주거복지상담사
	합계	7급갑	7급을	8급갑	8급을	9급갑~9급을	계약직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	8급을	9급갑~9급을	계약직	9급갑~9급을
현행	371	10	16	18	53	267	7	356	10	16	18	53	252	7	15
개정(안)	371	10	16	338			7	371	10	16	338			7	-
증감	-	-	-	-			-	15	-	-	15			-	△15

※ 2015년 노사합의(2015.12.24.)로 주거복지상담사를 임대주택 관리직원의 사무원에 포함

- 정수관리 ▶ 제8조(정수관리) 개정

·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승인권의 이사회 이관에 따라 정수관리부서의 '정수책정 승인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' 의무 삭제

- 한시정수의 운영기간 변경 ▶ 부칙 개정

(현행) 2년 미만 → (개정) **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**

※ 한시정수 : 제2조제5호의 이사회 승인인력 중 사용기간이 정해진 인력

- 별표1 「정원외 인력의 정수표」 개정

· 총정수, 본부별 정수, 사무기술전문가 정수, 임대주택관리직원 정수로 구분

V

소요예산

정원외인력	소요예산(인건비)	산출내역
계	171,715,536원/년	
속기사	32,026,536원/년	공사부문 보통인부 일일단가 적용
주거복지전문가	40,359,000원/년	4급 7호봉 수준
유통전문가	58,200,000원/년	전문직 나급(3급 상당) 평균치
식물전문가	41,130,000원/년	4급 8호봉 수준

**VI****향후 추진일정**

이사회 부의 (사장 방침 후) ⇨ 이사회 심의 ('16.3.17 예정) ⇨ 사규 공포 요청 (이사회 의결 후) ⇨ 공 포 (법무지원실)

※ 개정대상사규 : 직제규정,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

- 붙임 1. 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 이사회 부의안  
2. 직제규정 신·구대비표 및 공포문  
3.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신·구대비표 및 공포문. 끝.